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남극출입·활동과 관련한 위반행위 과태료 전환 등〉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671호)

2025. 9.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법률안의 입법 취지	2
2. 검토 의견	8
3. 종합 의견	14
※ 참고자료	1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2. 제안일자 : 2025년 3월 5일
3. 회부일자 : 2025년 3월 6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남극토착동식물 포획·채취 또는 남극특별보호구역 출입·활동의 경우와 같은 남극활동과 관련한 위반행위를 형벌을 통하여 제재하고 있음.

그런데 남극의 지리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실제 남극 출입은 연구 목적 등으로 한정되어 위반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고, 형벌이 아닌 행정제재만으로도 제반의무 준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남극출입 및 활동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후 반복 위반 시 형벌로 처벌하도록 하고, 사후통보 및 시정명령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기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불필요하게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

Ⅲ. 검토의견

1. 법률안의 입법 취지

개정안은 ①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남극출입 및 활동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 현행 형벌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후 반복 위반 시 형벌로 처벌하도록 하고, ② 사후통보 및 시정명령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벌금을 과태료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한 자 2. (생략) <u><신설></u>	제24조(벌칙) ----- ----- ----- -----. <u><삭제></u> 2. (현행과 같음) 3. 제2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u>과태료 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u>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제25조(벌칙) -----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긴급한 남극활동을 외교
부장관 및 남극활동감시원에
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
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활동한 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
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신 설>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5. 제27조제1항제1호의4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해당 처
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
위를 한 자

6. 제27조제1항제1호의5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해당 처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신설>

1.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
위를 한 자

제27조(과태료) ① -----

. 다만, 제24조 및 제25
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한 자

1의3.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긴급한 남극활동을 외교부장관 및 남극활동감시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
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1의5.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

2. ~ 7. (생략) <u><신설></u>	<u>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u> <u>그 구역안에서 활동한 자</u> 2. ~ 7. (현행과 같음) <u>7의2.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u> <u>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u> <u>터 60일 이내에 그에 따른 조</u> <u>치를 하지 아니한 자</u>
8. (생략) ② · ③ (생략)	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남극활동¹⁾을 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허가받은 남극활동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²⁾를 받도록 하고, 부
득이하게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남극활동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과 남극활동감시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³⁾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남극 토착 동식물을 포획·채취·반출하거나, 남극 외 지역의 동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남극활동”이라 함은 남극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행위를 제외한 과학조사, 시설
물의 설치, 탐험, 관광 그 밖의 활동을 말한다.

가. 항공기·선박 등으로 남극지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행위

나. 상업적 목적만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어로행위

2) 제4조(남극활동의 허가) ①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 중 대통
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할 수 있다.

1.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의 안전보호

3. 그 밖에 남극환경의 보호와 관련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 및 제18조제1항에 따
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식물을 남극으로 반입하는 행위, 남극 토착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와,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남극특별보호구역 및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남극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⁴⁾⁵⁾을 얻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허가 및 승인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형벌을 부과하여 제재하고 있음.

개정안은 남극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남극 출입이 연구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기존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남극환경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되는 특정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임.

4)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①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남극토착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하거나 남극지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남극토착동식물외의 동식물을 남극지역으로 반입하는 행위
3. 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훼손(毀損)을 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헬리콥터 또는 그 밖의 항공기의 이·착륙
나. 차량 또는 선박의 운행
다. 화약 또는 폭발물의 사용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기간·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① 외교부장관은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남극특별보호구역 및 남극특별관리구역

2. 남극사적지 및 기념물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기간·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는 동안 제3항에 따른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안의 형벌 완화 규정>

형벌규정	구성요건	현행형벌	개정안	
제24조 제1호6)	허가·변경허가 없이 남극활동을 한 경우	징역(3년 이하) 또는 벌금(3천만원 이하)	先 행정제재	과태료(1천만원 이하)
			後 형벌 전환 (2년 內 반복 시)	징역(3년 이하) 또는 벌금(3천만원 이하)
제25조7) 제1호	긴급한 남극활동의 미통보	벌금(1천만원 이하)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1천만원 이하)
제25조 제2호	승인 없이 남극토착동식물 포획·채취·반출 등	벌금(1천만원 이하)	先 행정제재	과태료(1천만원 이하)
			後 형벌 전환 (2년 內 반복 시)	벌금(1천만원 이하)
제25조 제3호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 승인 없이 출입·활동	벌금(1천만원 이하)	先 행정제재	과태료(1천만원 이하)
			後 형벌 전환 (2년 內 반복 시)	벌금(1천만원 이하)
제25조 제4호	시정명령 미이행	벌금(1천만원 이하)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1천만원 이하)

6)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자

7)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긴급한 남극활동을 외교부장관 및 남극활동감시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활동한 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검토 의견

현행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 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남극환경 보호 및 남극관련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되었음.

남극조약체제는 남극의 평화적 이용 및 남극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남극조약(Antarctic Treaty)·남극환경보호의정서 및 분야별 조약이 하나의 포괄적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 남극조약체제 >

조약명	연혁	주요내용	가입국
남극조약 (The Antarctic Treaty)	- 1959.12월 채택 - 1961.6월 발효	남극의 평화적 이용, 남극 내 과학조사 국제협력 촉진, 남극 영유권 주장 동결 등	58개국 - 우리나라 1986년 가입
남극환경보호의정서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 1991.10월 채택 - 1998.1월 발효	남극환경 및 생태계 보존, 환경보호위원회 설치 등 ※ 동 의정서에 대한 6개 부속서에서 세부 분야별 국제의무 규정	43개국 - 우리나라 1998년 가입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 1980.5월 채택 - 1982.4월 발효	남극해양생물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설치 등	37개국 - 우리나라 1985년 가입
남극물개보존에 관한협약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Seals)	- 1972.6월 채택 - 1978.3월 발효	남극 물개 포획 제한, 정보공유, 체약국간 협의 등	18개국 서명, 17개국 비준 (뉴질랜드 미비준) - 우리나라 미가입
남극광물자원활동규율에 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Regulation of Antarctic Mineral Resource Activities)	- 1988.6월 채택 - 0개국 비준으로 미발효	남극 내 광물자원 활동(탐사·개발) 관련 대응조치 및 책임, 정보공유, 남극광물자원위원회 설치 등	19개국 서명, 0개국 비준 - 우리나라 1988년 서명

(자료: 외교부)

남극조약은 남극 내 일체의 군사활동(군사기지 및 방비시설 설치·군사훈련·무기실험), 핵폭발 및 방사선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남극환경보호의정서는 과학연구 외 광물자원과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음⁸⁾.

그리고, 이러한 금지활동 위반에 대한 처벌은 각국의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극조약체제 내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다자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한 국가에 시정을 촉구하기도 함.

우리나라는 1986년 남극조약 가입 후 1989년 남극조약 협의당사국⁹⁾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ATCM) 및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등 남극 관련 다자협의체에서 활발히 활동 중임.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남극활동 관련 허가 및 승인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동 기간 남극활동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한 처벌 사례는 없었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로도 제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음.

8) ※ 기타 조약상 주요 금지조항

- 남극물개보존에관한협약: 동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협약상 규정된 남극 물개종 도살·포획 금지
- 남극광물자원활동규율에관한협약: 동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극 광물자원활동 금지, 특별보호구역·특별과학연구지역 내 광물자원활동 금지 등

9)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은 △남극조약의 원서명국 및 △남극조약에 따라 과학기지 설치 또는 과학원정대 파견 등 상당한 과학연구활동을 수행 중인 국가들로, 협의당사국회의에서 의결권을 보유

< 최근 5년간 남극활동 관련 허가 및 승인 현황 >

연도	남극활동허가 ¹⁰⁾ *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 승인 ^{**}
2021	총 52건 허가	총 21건 승인
2022	총 70건 허가	총 22건 승인
2023	총 60건 허가	총 19건 승인
2024	총 54건 허가	총 16건 승인
2025	총 3건 허가	총 0건 승인

* 현행법 제4조에 따른 허가

** 현행법 제13조에 따른 승인

(자료: 외교부)

다만, 현행 형벌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로서,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는 행정형벌과는 차이가 있고¹¹⁾, 어떠한 행정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유형과 처분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¹²⁾, 범죄 예방

10) 구체적인 허가사유 참고자료 참조.

11)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23. 599면.

<과태료와 벌금의 비교>

구분	과태료	벌금
개념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행정질서벌)	범죄인에 대한 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 (행정형벌)
부과주체	1차: 행정청 2차: 법원(이의제기시)	법원
불복절차	과태료재판 (간이한 비송절차)	형사소송
집행	이의제기할 경우 과태료 재판 확정 후 집행	유죄 확정 후 집행

12) 헌법재판소 1994.4.28. 선고 91헌바14

을 위해 필요하거나,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형벌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¹³⁾).

즉, 개정안의 입법 취지인 형벌 규정의 완화에 대해 남극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무분별한 활동으로 인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조항별 과태료 전환의 실익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다른 국가들의 남극활동 규제 및 처벌기준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남극활동 국가들은 대부분 허가 없는 남극활동, 남극 토착동식물 포획, 특별보호구역 출입, 폐기물 무단 처리 등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을 중심으로 처벌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남극보존법(Antarctic Conservation Act, 1978)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남극 토착동식물 포획 및 반출, 토착동식물 외 동식물의 남극에의 반입, 특별보호구역 내 활동, 오염원 남극 투기 등을 금지하고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3)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23. 602면.

< 과태료 처분 대상의 예외 >

과태료 처분 대상 위반행위 유형에 속하더라도 다음 사항은 형사벌로 처벌하도록 한다.

- ① 단순한 행정질서 위반이라도 이와 관련성이 깊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 ② 행정질서 위반이 결과적으로 위생과 안전의 확보를 크게 저해하는 사항
- ③ 정부 역점 정책에 관련되는 사항
- ④ 제도의 목적 자체를 침해하는 사항(신고영업의 경우 영업신고 등)
- ⑤ 그 밖에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형벌로 처벌해야 할 사항 등

이를 위반할 시 형벌을 부과¹⁴⁾하고 있으며,

영국은 남극법(Antarctic Act, 1994)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남극활동, 토착동식물에 유해한 활동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형벌을 부과¹⁵⁾하고 있음.

호주의 경우에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법(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onservation Act, 1981(2024 개정)), 남극조약(환경보호)법(Antarctic Treaty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0(2014년 전문개정)) 등을 통해 토착동식물에 유해한 활동, 유적지 훼손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¹⁶⁾하고 있으며,

일본은 남극지역의환경보호에관한법률(南極地域の環境の保護に関する法律, 1997(2014·2022·2025년 일부개정))을 통해 확인(승인)받지 않은 남극활동, 토착동식물에 유해한 활동, 특별보호구역 출입 등을 규제하고

14) 미국 남극보존법 제4조(a)상 금지행위 : △남극 토착 포유류 또는 조류(鳥類)의 반출, △특별보호구역에서 토착식물 채집, △토착동식물 외 동식물의 남극에의 반입, △특별보호구역 출입, △오염원 남극 투기, △남극 토착 포유류 또는 조류 소지·판매·수출입 등

제8조(a) : 미 국립과학재단 총재에 의해 동법 4조(a) 또는 7조상 규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자는, 통고 및 본조 (b)항의 심리 이후, 민사금전벌에 처한다.

제9조(a) : 제4조(a)에서 금지된 일체의 행위를 고의로 행하는 자는 유죄이다.

제9조(b) : 동조 (a)항의 위법행위는 1만 미불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에 처한다

15) 영국 남극법 제2편(Part 2)상 금지행위 : △허가 없이 입남극 또는 잔류, △남극 토착 포유류·조류를 고의로 도살·훼손·포획, 토착동식물 서식지 파괴, △토착동식물이 아닌 동식물 남극에의 반입, △보호구역(유적지 등) 출입 등

제20조 : 본 편을 위반하여 유죄 선고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에 처하며, 즉결재판의 경우 법정최고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호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법상 금지행위 및 벌칙

- 미허가 해양생물 채집 금지(자연인인 경우 500페널티유닛* 이하의 벌금, 법인인 경우 1,000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2024.11.7.자로 1Unit은 약 330호불이며, 매년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남극조약(환경보호)법 제5편(Part 5)상 금지행위 : △남극 토착 조류·무척추동물·물개 폐사·훼손을 유발하는 행위 및 포획, 토착동식물 식생 방해 및 서식지 파괴, △토착식물 채집, 토착동식물이 아닌 유기물 남극에의 반입, 견종·조류·비멸균 토사·살충제 등 반입, △유적지 훼손, △식용 목적으로 동식물 반입 등

- 상기 위반행위에 대해 2년의 징역 또는 120페널티유닛(Penalty Units) 부과

형벌을 부과¹⁷⁾하고 있음.

프랑스는 남극환경보호법(환경법전 제7권)(Code de l'environnement, Livre VII :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en Antarctique, 2003(2013, 2009, 2021 일부개정))을 통해 토착동식물에 유해한 활동, 특별보호구역 출입 등을 규제하고 이를 위반 시 형벌을 부과¹⁸⁾하고 있음.

독일은 남극환경보호의정서이행법(Gesetz zur Ausführung des Umweltschutzprotokolls vom 4. Oktober 1991 zum Antarktis-Vertrag, 1994)에 따라 형벌 및 행정제재를 부과¹⁹⁾하고 있는데, 독일은 이 법에서

17) 일본 남극환경보호법 제5조: 환경대신에게 남극활동 확인(승인) 신청 필요, 확인받지 않은 남극활동 금지
제3장 제2절상 금지행위*: △포유류·조류 사체 남극 반입(제14조1항), △남극 포유류·조류 포획·훼손·도살·알 채집 및 훼손(제14조2항1호), △유기물(바이러스 포함) 남극 반입(제14조2항2호), △남극 토착동식물 서식 및 생육 환경에 영향을 주는 행위(제14조2항3호), △남극특별보호구역 출입(제19조), △유적지 훼손 등(제20조)

* 과학조사 등 동법으로 정한 특정 남극활동, 남극환경보호의정서 당사국의 상당한 법령에 의해 허가받은 활동 등 일부 예외 인정

제2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제14조 1항 또는 2항(3호를 제외한다), 제18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3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인(승인)받은 남극활동계획상 장소·시기 이외의 장소·시기에 출입한 자*
- * 제29조 3호(남극특별보호구역 출입 제한 위반)의 경우 제외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승인)을 받은 자

18) 프랑스 남극환경보호법상 금지행위 및 벌칙

- (허가 대상인 활동) △고정 시설물의 설치 또는 기존 시설물의 변경, △남극에 동식물 또는 일체의 유기체나 미생물 반입, △남극의 현 상태에 변경을 가하는 건설 작업, △남극 대륙, 섬, 빙하에서의 동력 육상차량 사용, △마드리드의정서(남극환경보호의정서) 제2부속서 제1조 제8항에 따른 동식물 채취, △마드리드의정서 제5부속서에 따른 남극 특별보호구역 출입, △마드리드의정서 제2부속서 제1조에 따른 동식물의 채취, △마드리드의정서 제5부속서에 따른 남극 특별보호구역 출입

· 허가를 득하지 않은 활동을 조직하거나 그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허가를 득하였더라도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년의 징역 및 75,000유로의 벌금 부과

19) 독일 남극환경보호의정서이행법상 금지행위 및 벌칙

- (동식물 보존) △포유류 또는 조류 도살·훼손·포획·접촉, △ 토착식물을 그 분포 또는 밀집도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정도로 제거 또는 손상시키는 행위, △토착동식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조류 또는 물개 집결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헬기 또는 기타 항공기, 공기부양정 및 소형 보트를 포함한 육상 및 수상 이동수단, 폭발물 또는 총기를 사용하거나, 고의로 번식 또는 환모 중인 조류, 조류 또는 물개의 집결을 도보로 방해하거나, 항공기의 착륙, 차량의 주행, 밟는 행위 또는 기타 행위로 인하여 육상 식물 군집을 훼손하거나, 포유류, 조류, 식물 또는 무척추동물의 서식지를 심각한 수준으로 변형시키는 행위) 금지, △견종 반입 금지, △생물 가금류 또는 기타 조류의 남극 반입 금지, △허가 없이 토사 또는 동식물을 남극의 육상, 빙봉 또는 수상에 반입, △도축된 가금류 반입, △토사 또는 동식물을 제거하지 않거나 무균 소각하여 폐기하지 않는 행위

· 상기 위반행위 시 100,000 독일 마르크 이하의 과태료 부과(별도 규정 - 도축된 가금류에서 질병이 발견될 경우 남극으로의 운반 금지, 위반 시 20,000 독일 마르크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영리 목적, 상습적으로 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견종 반입, 생물 가금류 또는 조류 반입, 무허가 토사 반입, 무균소각 폐기 의무 위반의 경우 제외)

과태료 규정을 먼저 두고, 이 중 심각한 사항에 대하여 형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유사성이 있음.

3. 종합 의견

개정안은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형벌 규정을 완화하여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나, 남극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형벌 규정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주요 남극활동 국가들의 사례를 고려하여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면서도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외교부는 현행법상 형벌규정 중 제25조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행정상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으로, 행정제재인 과태료 전환을 통해서도 당초 제재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다만, 현행법상 남극활동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한 경우(제24조제1호),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제25조제2호),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 및 역내 활동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제25조제3호)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로 인한 남극환경에의 악영향이 심대하여 형벌의 과태료 전환으로 인한 실익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동조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의 과태료 전환은

- (보호구역 보존) 허가 없이 특별보호구역 출입·통행, 상공비행 금지
· 상기 위반행위 시 20,000 독일 마르크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영리 목적, 상습적으로 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부과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역시 개정안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남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지역으로 환경 보전의 필요가 크며, 환경 피해의 복원이 어렵고, 연구 목적 외의 남극 출입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제24조제1호, 제25조제2호, 제25조제3호의 경우에는 현행법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개정안의 형벌 완화 규정에 대한 정부 입장>

구분	제24조 제1호 ²⁰⁾	제25조 ²¹⁾ 제1호	제25조 제2호	제25조 제3호	제25조 제4호
구성요건	허가·변경허가 없이 남극활동을 한 경우	긴급한 남극활동의 미통보	승인 없이 남극토착동식물 포획·채취·반출 등	남극특별보호 구역 등에 승인 없이 출입·활동	시정명령 미이행
현행 형벌	징역 또는 벌금	벌금	벌금	벌금	벌금
개정안	先 행정제재 後 형벌 전환	행정제재 전환	先 행정제재 後 형벌 전환	先 행정제재 後 형벌 전환	행정제재 전환
정부 입장	신중검토	수용	신중검토	신중검토	수용

한편, 개정안에 따라 당초 시정명령 미이행 시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하던 제25조제4호를 과태료 1천만원으로 완화하게 되면, 현행 제27조제8호²²⁾에 해당하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내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20)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자

21)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긴급한 남극활동을 외교부장관 및 남극활동감시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활동한 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자'와 과태료 금액이 1천만원으로 같아지게 됨.

그러나 이는 '시정명령 미이행'을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내용 적시 미보고'보다 더 중한 위반으로 보아 벌금을 부과했던 기존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동 조항 개정 시 현행 제27조제8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태료 700만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 6788-5266

22)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 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에서 남극활동을 한 자
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내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 ②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④ 삭제
- ⑤ 삭제

【참고자료】 최근 5년간 남극활동 허가 현황

허가건명	허가일시	허가대상자
2021-2022년 장보고 1차(15건)	2021.9.27.	극지연구소
2021-2022년 세종 1차 및 러시아 보스톡기지(17건)	2021.10.25.	극지연구소
2021-2022년 남극해 1차(18건)	2021.10.20.	극지연구소
2021-2022년 세종 2차(2건)	2021.11.30.	극지연구소
2022 남극점 원정	2022.9.30.	김○○ 외 1인
2022-2023년 장보고 1차(26건)	2022.10.19.	극지연구소
2022-2023년 장보고 2차(1건)	2022.10.19.	극지연구소
2022-2023년 남극해 1차(12건)	2022.11.11.	극지연구소
2022-2023년 세종 1차 및 스페인프로그램 출연(29건)	2022.11.11.	극지연구소
남극 크루즈 관광	2022.11.2.	노○○
KBS 공사창립 50주년 대기획 <지구 위 블랙박스> 프로그램 촬영	2023.1.27.	KBS
2022-2023년 세종 2차(1건)	2023.2.15.	극지연구소
2023-2024년 장보고 1차(18건)	2023.10.26.	극지연구소
2023-2024년 세종 1차(1건)	2023.10.26.	극지연구소
2023-2024년 남극해(10건)	2023.11.14.	극지연구소
2023-2024년 세종 2차(26건)	2023.11.24.	극지연구소
남극 크루즈 관광	2023.11.27.	조○○
부산MBC <남극이 허락한 사람들-2부작> 다큐멘터리 촬영	2023.12.15.	부산MBC
2023-2024년 세종3차(1건)	2023.12.19.	극지연구소
마라톤 대회 참가	2024.9.30.	오○○ 외 1인
남극대륙 횡단 1,700km 단독 원정	2024.10.8.	김○○
2024-2025년 장보고 1차(18건)	2024.11.1.	극지연구소
2024-2025년 세종 1차(24건)	2024.11.7.	극지연구소
2024-2025년 남극해(8건)	2024.11.19.	극지연구소
남극 크루즈 관광	2024.12.10.	문○○
남극 크루즈 관광	2024.12.10.	정○○
2024-2025년 세종 2차(1건)	2025.1.2.	극지연구소
2024-2025년 세종 3차(1건)	2025.1.7.	극지연구소
남극 크루즈 관광	2025.2.4.	최○○